

# URUGUAY ROUND와 知的所有權 (1)



李 氣 盛  
(特許廳 審判所長)

## 目 次

- I. 머리말
- II. 우루과이 라운드의 推進背景
- III. 閣僚宣言文內容 및 協商構造
- IV. 議題別 先後進國의 立場
- V. 知的所有權保護의 最近動向
  - 가. 美國등 先進國主張의 背景
  - 나. 우루과이 라운드에서의 論議事項
  - 다. WIPO에서의 推進事項
  - 라. 美國의 知的所有權 保護를 위한 動向
- VI. 맺는말  
(고딕은 이번號, 명조는 다음號)

### I. 머리말

今年 7월부터 그동안 論難이 많았던 物質特許가 認定되고 外國人의 著作權 保護가 強化되었으며 이를 계

기로 하여 知的所有權에 對한 우리 業界와 一般國民의 關心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러나 이번의 改正法律의 施行으로 모든 問題가 解決된 것은 아니며 지금부터의 實施로 야기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에 대비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國際的으로는 現在 제네바에서 論議되고 있는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知的所有權이 통상문제와 관련된 중요한 의제의 하나로 채택되어 이를 規範化할 것을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들이 서두르고 있다.

우루과이 라운드는 GATT규정의 개정을 위한 多者間 協商으로 GATT는 2次大戰後 세계貿易의 自由化와 擴大를 爲하여 美國의 提唱으로 出帆하였으며 이는 金融分野에 있어서 IMF및 IBRD와 함께 오늘날의 自由主義 市場經濟體制의 變영을 가져온 兩支柱라고 불리어오고 있다. GATT는 그 탄생以後 지금까지 不斷히 改正을 계속하여 이미 7회에 걸쳐 改正을 하여 왔다. 그러나 GATT는 그 기본이 되는 自由貿易主義(Free Trade)와 最惠國待遇原則(Most Favorad Nation Treatment)에 많은 例外를 認定하고 있으며 이러한 例外와 變則의인 迂回는 점점 늘어나고 있어 惑者는 “GATT는 危機에 當面하고 있다”고도 한다. 사실 우리나라의 對先進國 輸出의 約 40%가 規制下에서 수출되고 있음을 불에 GATT體制의 無力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改正은 필요한 것이라 할 것이다. 지난해 9月 우루과이의 몬타 델 에스테에서 開催된 GATT閣僚會議에서의 宣言으로 第3次 GATT規範의 改正을 爲한 多者間協商은 公式로 始作되었으며 이미 협의기구의 결성이 완료되고 分野別로 日程이 마련되며 協商을 進行하고 있다.

知的所有權은 이번 協商中 하나의 議題로 採擇되었으며 앞으로 知的所有權은 通商問題와 關聯하여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논의될 뿐아니라 WIPO에서도 特許法의 統一化, 바이오 테크놀러지와 集積回路 Layout의 國際的 保護등을 추진하고 있어 가까운 장래에 지적소유권에 關한 國際規範에는 커다란 變化와 進展이 豫見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우리의 가장 큰 交易相對國인 美國에 의하여서 강력히 추진되고 있으며 미국은 國內的으로는 知的所有權保護強化를 爲한 여러가지 法案이 제출되어 현재 議會에 계류중이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1930年 美關稅法 337條의 改正인바, 現行規定은 (i) 輸入品이 知的所有權을 侵害 (ii) 美產業에 對한 實質的 侵害(Substantial Injury)라는 두가지 要件을 充足해야 物品搬入禁止命令 또는 不公正行爲中止命令을

할 수 있으나 改正案에서는 두번째 요건인 美産業에 對한 被害要件을 削除한 것이다.

이러한 지적소유권보호 분위기에 힘입어 미국의 Texas Instrument Co는 日本의 電子業界 8個社와 우리나라 三星電子를 특허침해를 이유로 美國國際貿易委員會(ITC)에 제소하였으며 수입정지를 우려한 大部分의 日本業界들은 T.I社와 和解가 성립되었으며 나머지 업체들도 협회에 의한 분쟁해결을 모색하고 있으나 Texas Instrument社 측이 요청하는 배상금의 규모는 너무나 큰 金額이라고 傳聞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나라의 첨단산업발전에는 美業界의 特許權侵害제소가 최대의 장애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리업계에서는 우려하고 있다.

그러므로 本稿에서는 우루과이 라운드를 개관하고 知的所有權에 關한 論議를 좀 더 詳述하기 위하여 이하에서 우루과이 라운드의 추진배경과 關係宣言文內容 및 協商構造議題別 先後進國의 立場, 知的所有權保護의 最近動向의 順으로 說明하기로 한다.

## II. 우루과이 라운드의 推進背景

### 가. 過去의 GATT Round

GATT는 1948年 設立된 以來 世界貿易擴大와 自由貿易基調를 유지하기 위해서 不斷히 노력하여 왔으며 그동안 表1에서 보는바와 같이 7차례에 걸친 多者間貿易協商을 통하여 改正되어 왔다. 第6次 케네디 라운드까지는 주로 그 당시에 무역의 확대를 가로막고 있던 것이 高率關稅였으므로 이를 除去하는데 노력하였다. 제7차 동경라운드에서는 既存關稅率을 平均 33%를 인

〈表 1〉 GATT多者間 貿易協商 一覽表

回數	名 稱	期 間	參加國	開催場所	新讓許 品目數
1	일관관세 교섭	47年 4月 47年 10月	~23개국	스위스 제네바	約45,000
2	"	49年 8月 49年 10月	~32 "	불란스 Annocy	約 5,000
3	"	50年 9月 51年 4月	~34 "	英國 Torguay	約 8,000
4	"	56年 1月 56年 5月	~22 "	스위스 제네바	約 3,000
5	Dillon Round	61年 5月 62年 7月	~23 "	"	約 4,400
6	Kennedy Round	64年 5月 67年 6月	~56 "	제네바등	約30,000
7	Tokyo Round	73年 9月 79年 7月	~99 "	東京·제네 바 등	約27,000

하함과 동시에 비관세장벽제거를 위하여 11개의 協定(MTN)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그 結果 2次大戰後에 30%가 넘던 先進國의 平均關稅率은 10%以下로 引下 되었다.

### 나. 우루과이 라운드의 擡頭背景

#### 1) GATT기능의 약화

GATT는 출발당시 되도록 많은 國家를 끌어 들이기 위하여 많은 例外를 許容치 않을 수 없었으며 그 후에도 운영과정을 통하여 GATT의 自由貿易主義의 最惠國待遇原則을 잠식하는 여러가지 類型이 蔓延되어 왔다. 첫째, GATT는 地域的經濟統合을 위한 例外를 認定함으로써 域內貿易을 증진시켰으나 이는 域外貿易을 差別하는 것으로서 오늘날 EC의 域外貿易比重이 적은 것이 그 代表的인 例라고 하겠다. 둘째, 섬유·농산물 등 품목은 GATT體制 밖에서 貿易이 이루어지는 것이 長期化되고 各國의 輸出規制는 점점 더 強化되고 있다. 그러므로 섬유는 纖維輸出開途國으로 부터, 農産物은 美國·호주·뉴질랜드등 農産物輸出國으로 부터 改正의 요구가 강력히 대두 되고 있다. 셋째, 최근의 무역분규는 무역전쟁을 방불케 하는데 현재의 GATT 體制는 이러한 분쟁을 解決해 나갈 手段이 缺如되어 있다. 현재의 분쟁처리방안은 양국간에 협회에 의해서 해결을 권장하고 협의가 안될때는 이사회에서 勸告案을 채택, 통보토록 되어 있으나 侵害國이 권고안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최종적으로 被害國이 報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強大國의 경우는 보복이 가능하겠지만 弱小國의 경우는 이러한 自力救濟는 不可能한 것이다.

#### 2) 保護主義의 擴散

過去 7회에 걸친 協商으로 關稅率이 낮아져 關稅가 더이상 國內産業保護手段으로 役割을 할 수 없게되자 各國은 非關稅措置를 利用하여 國內産業을 보호하여 왔으며 이러한 경향은 2차에 걸친 석유파동을 거치면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비관세장벽의 제거를 爲한 11개의 MTN Code는 이러한 보호주의 조치에 效果的인 대응방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各種 비관세장벽은 기준이 불명확하고 關稅와 같이 可視性이 없어서 이를 摘出해 내기도 어려운 점이 있다. 특히 GATT 19條를 援用한 産業救濟措置는 선진국에서 빈번히 發動되고 있으며 또한 中進國에 대한 선별규제를 하고 있어 最惠國待遇條項에는 크게 違反하고 있는 實情이다. 최근에 와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O. M. A(Oderly Marketing Arrangement)와

VER(Voluntary Export Restrain) 등 輸入國의 壓力에 의한 輸出自律規制의 誘導는 灰色地帶措置(Grey Area)라고 하여 우루과이 라운드에서는 關係國間에 열린 論爭의 대상이 되고 있다.

3) 貿易環境변화에 따른 GATT의 適應必要

산업고도화에 따라 서서비스의 비중이 점증하고 있으며 서서비스는 이미 세계 총 GDP의 64%(1980년기준)에 이르고 있으며 서서비스무역은 6,100억불(1980년기준)으로 세계 총 상품교역의 35%에 이르고 있다. 또한 고용면에서 보면 선진국의 경우 고용의 70%정도가 서서비스에 종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서서비스를 除外하고 상품만을 交易의 대상으로 하는 GATT는 이를 改正하여 서서비스를 포함하여야 한다는 미국 등 선진국의 主張은 이를 肯定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오늘날 多國籍企業의 活動은 더욱 활발해 지고 있으며 國家間의 투자와 기술교류가 더욱 긴밀화되고 있는데 호응하여 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투자환경의 자유화와 지적소유권보호의 국제화가 필요하며 이것은 무역과도 긴밀한 관계가 있으므로 GATT에서는 이를 규범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번 우루과이 라운드 선언문에서 받아들여 지게 되었다.

4) 미국의 무역적자

흔히 自由貿易期라고 일컫는 1950~1960년 대는 GATT의 노력에 의하여 自由貿易이 유지되었다기 보다는 PAX Americana라는 기치하에 미국이 自國의 이익을 가장 잘 보장하는 수단으로 自由貿易을 지탱해 왔다. 즉 GATT를 中心으로 한 다자간무역체제란 일종의 대리자에 不週하고 실질적인 自由貿易 수호자는 美國이었다. 美國이 이와같이 自由貿易을 謳歌하고 이를 守護한 것은 自國産業의 막강한 競爭力으로 因하여 무역 흑자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 의서 事情은 달라져 美國의 貿易은 지난해에도 1,700억弗에 이르는 赤字를 보이고 있으며 이것은 美國의 製造業의 洞空化現狀에 의한 競爭力喪失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美國은 既存의 GATT規定에는 더 이상 흥미를 느끼지 못하며 이를 개정해서 美國이 比較優位를 갖고 있는 농산물, 서서비스의 交易自由化와 High Teck제품의 交易를 爲한 知的所有權保護, 多國籍企業의 活動을 爲한 投資環境改善을 國際規範化하려는 것이다.

다. 推進經緯

1983年 11월 美·日頂上會談에서 나카소네 首相은 레이건 대통령에게 New Round 추진을 提議하여 이를

爲하여 兩國이 共同努力할 것에 合意하게 되었던 바 이와같은 日本의 적극적인 발의에는 양면의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우선 현재 GATT의 自由貿易體制로부터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나라는 일본이며 日本은 이제 經濟大國으로서 自由무역체제를 守護하는데 앞장서겠다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貿易赤字가 가장 큰 나라는 日本이며 이로 因한 미국의 日本에 대한 불만은 兩國間 貿易協商에서 강력한 輸入開放壓力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兩國間 雙務의 協商을 多者間協商으로 끌고감으로써 雙務의인 壓力을 회피하고 다른 나라와 共同으로 自由化方向으로 나가려고 하는 의미인 것이다.

이와같은 美·日間의 합의후 다음 表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러차례의 공식, 비공식회의를 거쳐 1986년 9월 우루과이 라운드를 선언하기까지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立場의 차이에서 오는 對立과 갈등은 매우 심하였으며 우리나라는 先進開途國으로서 이러한 선·후진국의 仲裁者의 役割을 하기에 최선을 다하였다. 그리하여 1986년 5월에는 주요 貿易國의 貿易長官과 GATT關係官을 초청하여, 서울에서 非公式會議를 개최하여 New Round의 早期出帆을 다짐하기도 하였다.

〈表 2〉 우루과이 라운드 關係 宣言까지의 經緯

일자	회	담	주요 내용
83. 5.	윌리엄스버그	經濟頂上會談(Summit)	○새로운 貿易自由化고성 實現에 努力할것을 합의
83. 11.	美·日	首腦會談	○美·日 主導下에 뉴라운드 推進을 合意(나카소네 선언)
84. 3.	東京	심포지움	○심포지움을 통한 뉴라운드 추진을 합의
84. 4.	서울	국제무역회의	○뉴라운드에 대한 개도국 참여 방안모색
84. 4.	발리	회의	○뉴라운드에 대비, 亞·太地域國家協力方案모색 ○83年 11月 호주 제안에 의함
84. 5.	워싱턴	通商長官會議	○뉴라운드의 早期準備의 必要性에 對하여 合意
84. 5.	OECD	閣僚이사회	○뉴라운드의 早期準備의 必要性에 對하여 合意
84. 6.	런던	經濟頂上會談(Summit)	○뉴라운드 早期開始에 合意
84. 6.	西方 4國	通商會議	○뉴라운드推進戰略檢討

		(推進方向 및 對開途國 交涉戰略)
84. 9.	브라질通商長官 會議	○先進國, 뉴라운드 早期 開始의 必要性을 強調
84. 11.	第40次 GATT總會	○뉴라운드에 대한 先·開 途國間 意見對立 ○美·日·EC 등 뉴라운드 推進必要性 공식제의
85. 2.	3國通商長官會議	○86년에 교섭을 개시하는 것을 目標로 할것에 합의
85. 3.	E.C理事會	○E.C뉴라운드 참여를 정 식으로 表明
85. 4.	OECD閣僚理事會	○「가능한 한 빠른시기에」 뉴라운드 開始하기로 합 議
85. 5.	본 經濟頂上會談 (Summit)	○OECD의 公式聲明을 支 援
85. 6.	스톡홀름 世界通 商長官 會議	○7月の GATT理事會에 各國의 立場을 밝히는 Submission paper를 제 출하기로 함
85. 7.	GATT理事會	○서비스의 議題包含을 反對하는 強硬開途國에 의하여 理事會 自體가 無期延期됨
85. 10.	GATT特別總會	○뉴라운드 準備를 公式宣 言함. 高位實務그룹 (Group of senior offici- als)을 設置하여 준비에 돌입함
85. 11.	第41次 GATT 定 期 總會	○뉴라운드 준비 위원회가 결성됨. ○동준비위원회는 '86.1~ 7月까지 활동
86. 1.	뉴라운드 準備委 員會 第1次 會議	○서비스의 議題包含 여 부 決定하지 못함
86. 5.	서울세계통상장관 회의	○뉴라운드개시를 위한 先 ·開途國間의 事前 協議
86. 5.	先進國世界經濟頂 上 會談	○뉴라운드등 당면한 世界 經濟 현안논의
86. 7.	뉴라운드 準備委 員會 終結	○뉴라운드 개시를 위한 閣僚宣言草案 3個案作成
86. 9.	GATT 閣僚會議	○우루과이 라운드로 命名 하고 宣言文을 채택함

### Ⅲ. 閣僚宣言文 內容 및 協商構造

#### 가. 우루과이 라운드 閣僚宣言文

1986年 9月 우루과이에서의 자료선언문을 準備하기 위하여 準備委員會가 設置되고 同準備委員會는 자료회의에서 채택한 協商의 基本規範(Modelity)를 9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論議하였다. 가장 큰 爭點은 서비스를 議題에 포함시킬 것인가였고, 그외에도 투자, 지적 소유권문제등 New Issues와 농산물에 대한 오랜동안의 論難이 계속되었다. 그 결과 자료회의에 제출할 宣言文草案이 單一案으로 작성되지 못하고 선진국이 제안하고 온건 개도국이 지지하여 32개국의 지지를 받은 소위 G-32案과 강경개도국이 제출한 G-10案, 그리고 양자를 절충한 알젠틴案的 3個案이 共同으로 提出되었다. 其中 알젠틴案은 전혀 다른국가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결국은 G-32案에 약간의 수정을 하여 선언문이 채택되었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序 文

○ 다자간 무역협상의 개시를 선언(우루과이 라운드라 命名함)

○ 貿易協商을 實施하기 위한 貿易協商委員會(TNC: Trade Negotiations Committee)를 設置하고 1986年 10月 31日 以前에 첫 모임을 갖기로 함.

○ 協商은 4年 以內에 終結기로 함.

##### ② 第1部(商品貿易에 관한 協商)

○ 目 的

—世界貿易의 自由化 促進

—GATT의 機能強化

—國際貿易 環境變化에 適應한 GATT體制

—個別國과 經濟協力の 強化(특히 經濟政策)

○ 協商原則

—明確性(Transparent manner)

—모든 協商結果의 履行은 單一課題의 部分으로 取扱 되어야 함.

—均衡된 相互讓許

—開途國에 대한 優待條項適用

—最後進國에 대한 特別配慮

○ 保護主義措置의 凍結(Stantill)과 철폐(Roll back): 협상기간중 GATT 위배 조치를 동결하고, 협상이 동결되기전 승의된 계획하에 GATT 위배 조치는 철폐함. 감시기구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貿易協商委員會가 감시업무 수행을 위한 제반체계에 대한 결정을 함.

○ 協商對象: 1) 관세. 2) 비관세조치. 3) 熱帶產品  
4) 天然資源產品. 5) 섬유 및 의류. 6) 농산물. 7)  
GATT규정. 8) 긴급수입제한 조치. 9) MTN協定 10)  
보조금과 상계관세. 11) 紛爭解決節次. 12) 知的所有  
權의 貿易關聯 側面(위조상품 포함). 13) 貿易關聯 投資  
措置

○ GATT體制的 機能

- GATT 감시기능의 강화
- GATT의 意思決定과 效率性 提高
- 通貨機構와의 協調를 통한 GATT의 기능증대

○ 協商參與: GATT會員國, 잠정가입국, 실제적용  
국, 加入節次 推進開途國

○ 協商的 組織: GNG(Group of Negotiation on  
Goods)가 協商的 제반 문제점과 과정을 책임짐.

③ 第2部(서어비스 貿易에 관한 協商)

○ 서어비스에 대한 多者間貿易原則 및 規範을 設定  
하기 위한 協商開始를 決定함.

- GATT절차와 慣行을 서어비스협상에도 적용함.
- 서어비스協商그룹(GNS: Group of Negotiation  
on Servic)을 設置(TNC에) 보고키로 함.

④ 第1部와 第2部 協商結果의 處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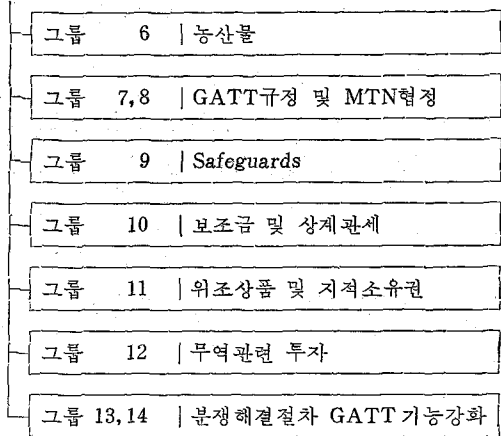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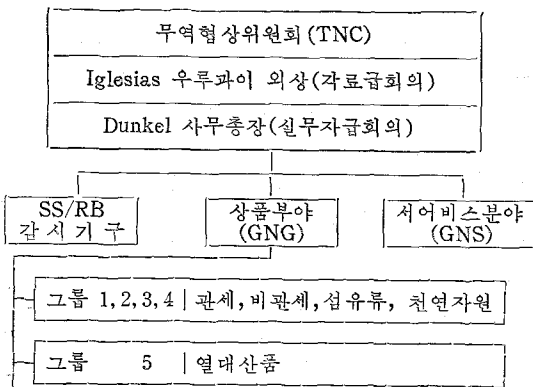
○ 모든 協商終了後 特別閣僚會議를 개최하여 履行  
方法을 決定함.

나. 協商構造 및 計劃

1) 協商機構

협상구조는 다음 圖表에서 보는 바와같이 貿易協商  
委員會(TNC) 밑에 Standstill and Rollback 감시기구  
와 상품분야협상그룹(GNG)과, 서어비스분야 협상  
(GNS)를 두고 다시 GNG밑에 各議題別로 협상 소구  
를 두어 이를 추진토록 되어 있다.

<圖 表>



분야별 의장선출(12명)

- 선진국: 6명(미국, 일본, 호주, 화란, 스웨덴, 캐나다)
- 개도국: 5명 (한국, 브라질, 말린, 홍콩, 우루과이)
- GATT: 1명

2) 協商計劃

협상은 초기단계와 후속단계로 구분하여 協商을 進  
행키로 하였으며 初期段階('87年 末까지)에서는 협상  
대상을 도출하고 이를 확인키 위하여 各國의 提案과  
현행제도를 檢討할 것이며, 후속단계 ('88이후)에서는  
初期段階의 結果를 基礎로 協商目的에 따라 結論을 導  
출하는 것으로 計劃하였다.

3) 協商的 展望

협상의 성공여부는 매우 불투명하여 현재까지의 의  
제별 협상진전은 긍정적이나 협상의 성공여부 판단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하겠다.

자료선언문에서는 4년내에 타결을 목표로하고 있으  
나 경제발견정도에 따라 각국의 이해와 關心이 상이하  
며 주요 이슈에 관하여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매우 어  
려울 것 같아 早期妥結의 展望은 어두운 것으로 생각  
된다. 뿐만 아니라 1988年의 主要國選舉, 美國등 議會  
內 保護主義立法動向, 各國間 貿易不均衡 및 무역마찰  
등을 고려할때 1989年 以前까지는 同協商的 진전이 더  
딜것으로 豫想하고 있다.

東京라운드의 경우도 8년이 걸린것을 볼 때 이번 우  
루과이 라운드와 같이 광범위한 협상은 10년이 넘게  
걸릴지도 모른다는 견해도 있다. <계속>